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이 현 찬 의원입니다.
「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- 본 조례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전부개정[대통령령
제32223호, 2021.12.16., 전부개정, 시행 2022.1.13.]에 따라
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조정하려는
것으로써 검사위원의 정수는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
하며, 검사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3분의 1 이하로
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
것입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
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